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728

제출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1. 제안이유

가. 사회혁신 인재 발굴·양성 사업 추진에 대한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,

나. 서울혁신파크의 부대시설에 대한 이용료 부과기준 및 감면 대상 등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혁신인재 양성 등의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).

나. 서울혁신파크의 부대시설(대관시설, 연수시설, 부설주차장 등)의 이용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, 시설별 이용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(안 제8조의2 및 별표).

1) 대관시설(강당, 회의실 등)은 면적 및 이용시간에 따라, 연수시설은 객실의 크기와 숙박일수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산정함.

2) 부설주차장은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중 일반에게 개방된 부설주차장의 요금을 적용하여 산정함.

※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23조에 따라 일반에게 개방된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공영주차장의 요금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.

다. 부대시설 이용료에 대한 감면 규정을 규정함(안 제8조의3).

1) 시,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무 수행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관시설, 연수시설, 부설주차장의 이용료를 모두 감면함.

2)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한 혁신기관, 단체, 기업의 경우에는 대관시설 및 연수시설은 100분의 50, 부설주차장은 100분의 30을 감면함.

3) 그 밖에도 장애인, 국가유공자, 고엽제후유증환자, 의사상자, 독립유공자, 5·18민주화유공자,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, 전기자동차, 보훈대상자의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7조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　　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2) 입법예고('20. 5. 14.~6. 3.) 결과: 의견 있음(별도 첨부)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의 절차, 방법 및 지도·감독 등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4조제7호 중 “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를 “시장”이라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사용료)”를 “(입주시설에 대한 사용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서울혁신파크 내 시설은”을 “시장은 서울혁신파크 내의 입주시설에 대한”으로 한다.

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부대시설에 대한 이용료) 시장은 서울혁신파크에 설치된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부과·징수할 수 있고, 시설별 이용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8조의3(이용료의 감면) 제8조의2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대관시설(강당, 회의실 및 그 밖의 옥내·외의 시설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연수시설: 다음 각 목에 따라 감면함.
   가. 서울특별시,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 수행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: 면제
   나.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한 혁신기관, 단체, 기업이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경우: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
2. 부설주차장: 다음 각 목에 따라 감면하되, 감면 사유가 2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함.
   가. 서울특별시,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차량을 공무 수행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: 면제
   나.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한 혁신기관, 단체, 기업에서 이용하는 경우: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
   다.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제7조제1항제1호, 제2호, 제6호, 제7호, 제9호 및 제10호를 준용하여 감면함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부대시설 이용료 신설에 따른 적용례)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〔별표〕

서울혁신파크 이용료 부과기준 〔제8조의2 관련〕

구분		단위	기준금액(원)	비고
1.대관시설(강당, 회의실 및 그 밖의 시설)	가. 실내	1㎡ 당/1시간당	200~300	○ 이용 시간 - 월~목 : 09:00 ~ 22:00 - 금~토 : 09:00 ~ 17:00 ※공휴일·대체공휴일은 대관하지 않음. ○ 시청각 장비 사용료 별도
	나. 야외	1㎡ 당/1시간당	10~20	
2. 연수시설	가. 1~2인실	1박당	40,000~50,000	○ 숙박 예약 시, 이용일 이전 3일 전(토요일·공휴일·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)까지 신청서 작성 및 제출
	나. 4인실	1박당	80,000~100,000	
	다. 5인실 이상	1박당	120,000~150,000	
3. 부설주차장		○ 주차요금은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의 별표1(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)에서 2급지 기준을 적용		○ 10분 이내 회차 시 무료(택배, 우편차량에 한하여 30분 주차요금 면제)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기능) 서울혁신파크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3조(기능) ① ----------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②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의 절차, 방법 및 지도·감독 등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제4조(설치) 서울혁신파크 내에는 혁신을 창출하고, 확산하며,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으며, 구체적인 시설의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4조(설치) ----------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	7. ------ 시장 ----------
제6조(사용료) ① 서울혁신파크 내 시설은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	제6조(입주시설에 대한 사용료) ① 시장은 서울혁신파크 내의 입주시

현 행	개 정 안
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용료를 부과·징수한다.	설에 대한 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8조의2(부대시설에 대한 이용료) 시장은 서울혁신파크에 설치된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부과·징수할 수 있고, 시설별 이용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<신 설>	제8조의3(이용료의 감면) 제8조의2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 1. 대관시설(강당, 회의실 및 그 밖의 옥내·외의 시설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연수시설: 다음 각 목에 따라 감면함. 가. 서울특별시,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 수행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: 면제 나.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한 혁신기관, 단체, 기업이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경우: 100분의

현 행	개 정 안
	50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2. 부설주차장: 다음 각 목에 따라 감면하되, 감면 사유가 2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함. 가. 서울특별시,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차량을 공무 수행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: 면제 나.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한 혁신기관, 단체, 기업에서 이용하는 경우: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다.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제7조제1항제1호, 제2호, 제6호, 제7호, 제9호 및 제10호를 준용하여 감면함.

[별지 제2호서식]

입법예고결과 요약서(제8조1항 관련)		
의견 제출자	제 출 의 견	조 치 내 용
혁신파크 단체협의회	○ 현행조례 제12조에 서울혁신파크의 업무를 위탁받는 서울혁신센터 규정이 존재하므로 제3조 제2항이 신설되면 두 조항이 중첩되어 업무체계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	○ 미반영 - 서울혁신센터는 현재 혁신인재 발굴·양성 기능을 별도로 수행하고 있지 않은 바, 향후 민간 위탁 시 센터와 역할이 중첩되지 않도록 운영 예정
	○ 제8조의3 주차료 감면비율 반대 - 해당 조항 신설 시 주차요금이 5년간 3번의 실질적 인상이 이루어짐 - 감면비율 결정 시 입주기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-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제7조 준용 시 조례 개정 취지와 어긋날 우려가 있음	○ 일부반영 - 차 없는 서울혁신파크 조성을 위해 정기권의 수요를 조절하기 위하여 감면비율 조정 필요 - 향후 조례 개정 시 입주기관과 적극적인 소통 추진 - 주차요금 감면비율과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7조 제1항 제1호, 제2호, 제6호, 제7호, 제9호, 제10호 준용으로 수정
	○ 서울혁신파크운영위원회를 조례에 규정하고, 입주기관의 지원을 개선하는 내용을 마련할 것을 요구	○ 미반영 - 위원회 구성을 위해 서울협치 담당관과 사전 협조 절차가 필요한 사항으로, 향후 조례 개정시 필요 절차 이행 후 추진

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서울혁신파크의 기능(혁신인재 발굴·양성 및 그에 필요한 지원체계 구축)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세출 증가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

○ 총 비용 : 2,375,400천원(연 평균 475,080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출	인건비	158,400	166,320	174,240	182,160	190,080	871,200
	사업비	300,840	300,840	300,840	300,840	300,840	1,504,200
계		459,240	467,160	475,080	483,000	490,920	2,375,400

○ 비용 추계 전제

- 인건비: 서울혁신센터 인건비 기준(인건비 상승에 따라 매년 5% 인상 기준)
- 사업비: 서울혁신센터 사업비 준용

※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중

4. 작성자

서울혁신담당관 행정6급 고소영(2133-6310)